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관리준칙

제정 2004. 12. 31

개정 2005. 05. 25

개정 2005. 09.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망식별 번호(Autonomous System Number)”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동일한 라우팅 정책을 갖는 자치 네트워크를 구분하기 위한 국제표준 방식의 번호 식별 체계를 말한다.
2.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관리대행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라 함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3.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 함은 관리대행자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은 자를 말한다.
4.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독립사용자(이하 ‘독립사용자’라 한다.)”라 함은 진흥원으로부터 직접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은 자(관리대

행자 제외)를 말한다.

5.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신청자(이하 ‘IP주소신청자’라 한다)”라 함은 진흥원으로부터 직접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 제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준칙은 진흥원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제4조(할당조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5조(할당대상) ①진흥원은 관리대행자·독립사용자 또는 IP주소신청자에게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단, IP주소신청자는 망식별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②관리대행자는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제6조(할당기준)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1.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주소가 80% 이상 사용된 경우
2.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 주소가 별표 제1호 사용밀집도의 한계값 이상 사용된 경우
3.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계획 및 신청수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할당신청) ①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진흥원이 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할당 등) ①진흥원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당 내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②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은 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진흥원은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제9조(할당된 주소의 회수)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2.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3. 수수료 및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독립사용자가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제3자에게 재할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0조(주소이전) 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는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및 계획을 진

홍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장 수수료 및 분담금

제11조(수수료 및 분담금) ①관리대행자는 별표 제2호의 수수료 및 분담금을 진홍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②독립사용자는 별표 제3호의 수수료 및 분담금을 진홍원에 납부하여야한다.

③관리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IP주소신청자는 별표 제4호의 등록수수료를 진홍원에 납부하여야한다.

제12조(연기 및 이자율) ①관리대행자 또는 독립사용자는 청구된 수수료 및 분담금의 납부를 미루고자 하는 경우 납부 종료일까지 진홍원에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진홍원은 연기기간 중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환급) ①진홍원은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주소가 제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해 회수되는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주소 수수료를 회수일로부터 연 말까지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②진홍원은 독립사용자의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주소가 전부 회수되는 경우 독립사용자 분담금을 회수일로부터 연 말까지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③진홍원은 관리대행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이 취소된 경

우 관리대행자의 분담금 또는 등록수수료를 선정취소일로부터 연 말까지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제4장 관리대행자 선정 및 관리

제14조(선정조건) 관리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인터넷교환망에 T1급 이상으로 두 곳 이상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이어야 한다.

제15조(선정신청) 관리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관리대행자 선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법령 또는 기간통신사업자허가증 ·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 · 부가통신사업자신고필증
4.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관리준칙 이행 동의서
5.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사업계획서
6.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정보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약관
7. 인터넷 망 구성도 및 연동 확인서
8.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변경 계획
9. 향후 1년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사용 계획

제16조(선정) 진흥원은 관리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대행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행자 선정서를 교부한다.

제17조(선정취소) ①진흥원은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4조의 선정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이 준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시정을 요청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선정이 취소된 자는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대행자의 의무) ①관리대행자는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관리대행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자는 진흥원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제5장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정보 및 시설 보호

제19조(정보수집) 진흥원은 법 제15조에 따라 관리대행자·독립사용자 또

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정보공개) 진흥원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리대행자·독립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개한다.

제20조(정보제공의 제한) 진흥원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보호) 진흥원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관리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네트워크보호, 시스템보호 등)
2. 물리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출입통제, 외부 침입의 감지 및 감시 등)
3.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재해방지, 시스템 장애방지 등)
4.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인적 보안, 기록의 보관 등)

제6장 보 칙

제22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준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04.12.3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준칙 시행당시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자중에서 진흥원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이 준칙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준칙 시행당시 관리대행자등에게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는 이 준칙에 의하여 할당된 것으로 본다.

③이 준칙 시행당시 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은 자 중에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개정 2005.05.25)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준칙 시행당시 인터넷 접속 역무를 제공하지 않는 진흥원의 관리대행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관리대행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준칙 시행당시 관리대행자 및 독립사용자에게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는 이 준칙에 의하여 할당된 것으로 본다.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준칙 시행당시 독립사용자 및 이 준칙 시행이후 진흥원 관리범주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이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개정 2005.09.2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 주소 사용밀집도의 한계값

프리픽스	48-프리픽스	총 /48의 수	한계값	사용률(%)
48	0	1	1	100.0%
47	1	2	2	87.1%
46	2	4	3	75.8%
45	3	8	5	66.0%
44	4	16	9	57.4%
43	5	32	16	50.0%
42	6	64	28	43.5%
41	7	128	49	37.9%
40	8	256	84	33.0%
39	9	512	147	28.7%
38	10	1024	256	25.0%
37	11	2048	446	21.8%
36	12	4096	776	18.9%
35	13	8192	1351	16.5%
34	14	16384	2353	14.4%
33	15	32768	4096	12.5%
32	16	65536	7132	10.9%
31	17	131072	12417	9.5%
30	18	262144	21619	8.2%
29	19	524288	37641	7.2%
28	20	1048576	65536	6.3%
27	21	2097152	114105	5.4%
26	22	4194304	198668	4.7%
25	23	8388608	345901	4.1%
24	24	16777216	602249	3.6%
23	25	33554432	1048576	3.1%
22	26	67108864	1825677	2.7%
21	27	134217728	3178688	2.4%
20	28	268435456	5534417	2.1%
19	29	536870912	9635980	1.8%
18	30	1073741824	16777216	1.6%
17	31	2147483648	29210830	1.4%
16	32	4294967296	50859008	1.2%
15	33	8589934592	88550677	1.0%
14	34	17179869184	154175683	0.9%
13	35	34359738368	268435456	0.8%
12	36	68719476736	467373275	0.7%
11	37	137438953472	813744135	0.6%
10	38	274877906944	1416810831	0.5%
9	39	549755813888	2466810934	0.4%
8	40	1099511627776	4294967296	0.4%
7	41	2199023255552	7477972398	0.3%
6	42	4398046511104	13019906166	0.3%
5	43	8796093022208	22668973294	0.3%
4	44	17592186044416	39468974941	0.2%

※ RFC 3194 'The Host-Density Ratio for Address Assignment Efficiency: An update on the HD ratio'(2001.11) 참조

[별표 제2호] 관리대행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

(부가세 별도)

구 분	금 액	비 고
IPv4주소 수수료	/32 주소 당 30원/년	일할계산
IPv6주소 수수료	별표 제1호 한계값 1당 3원	최초할당시
관리대행자 분담금	300만원/년	선정연도제외, 일할계산

[별표 제3호] 독립사용자의 수수료 및 분담금

(부가세 별도)

구 분	금 액	비 고
IPv4주소 수수료	/32 주소 당 30원/년	일할계산
독립사용자 분담금	30만원/년	등록연도제외, 일할계산

[별표 제4호] 등록수수료

(부가세 별도)

구 분	금 액	비 고
관리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록수수료	300만원	선정연도, 일할계산
IP주소신청자 등록수수료	300만원	부칙 제2조제3항의 유예대상자 제외

지정번호 : 제 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관리대행자 선정서

기 관 명(국문) :

서비스명(영문) :

대 표 자 :

주 소 :

선 정 일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대행자로 선정합
니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인)